

광주지방법원 2020. 2. 7 선고 2018나5992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0. 2. 7 선고 2018나59921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. 8. 14 선고 2017가단367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

피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 담당변호사 한재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균영, 이고은, 류노엘

변론 종결2019. 12. 6.

판결 선고2020. 2. 7.

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. 8. 14. 선고 2017가단3677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197,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4. 22.부터 2020. 2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 중 9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57,802,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7,349,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재판장판사김성곤

판사김성준

판사박주영